

춘천지방법원 2022. 12. 15 선고 2022나30840 판결 [계약금반환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춘천지방법원 2022. 12. 15 선고 2022나30840 판결

춘천지방법원화천군법원 2022. 1. 27 선고 2021가소151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B

변론종결 2022. 11. 10.

판결선고 2022. 12. 15.

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화천군법원 2022. 1. 27. 선고 2021가소151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장두봉, 판사 신흥호, 판사 여현주